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재생원료 사용확인을 통한 시장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관리센터TF

2024.9.27.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CONTENTS

- ▶ 01 재생원료 주요현황
- ▶ 0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 ▶ 03 향후 추진계획
- ▶ 04 맺는말





아래 도안은 무엇일까요?



플라스틱 재생원료





아래 도안 중 잘못 표기된 것은 무엇일까요?

1



플라스틱 재생원료

2



3



플라스틱 재생원료

4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1. 재생원료 주요현황



01 재생원료 주요현황



01 재생원료 관련 국제동향



EU

1회용 음료용기
('30년 30%, '40년 65%)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0년 35%, '40년 65%)



영국

플라스틱 포장재
('22년 30%)



독일

PET병('25년 25%)
1회용 플라스틱 음료용기
('30년 30%)



미국

캘리포니아 주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및 제품
'22년 15%
'25년 25%
'30년 50%

01 재생원료 주요현황



02 관련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

국정과제89(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및 관련제품 공공구매 확대, 국제표준 기반의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 마련

관계부처 합동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23.6.21)

- ✓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및 인증제도 마련
- 국내 기업의 해외인증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제도 마련

관계부처 합동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22.10.20)

- ✓ 재활용품 사용 촉진
- EU등에 통용 가능한 국제표준 기반의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 마련, 일정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시 제품에 표시 및 지자체 우선 구매 제도화

전 주기 脫플라스틱 대책

2022. 10. 20.

관계부처 합동

□ 중독병은 운영중인 유사·중복 제도를 통합하여, 중복 규제에 의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회성 강화

- 제품별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

구분	재활용가능성 평가	순환이용성 평가	환경정보공개
대형	중요성	중요성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중형	중요성	중요성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소형	중요성	중요성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일회용	중요성	중요성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적 재활용 유도

□ 재활용지원금 제도를 재편하여, 소각형 재활용(영리수·고형연료)중 고품질 물질·화학적(일본제 등) 재활용으로 유도

* 품종 맞춤형 재활용 중점 재활용지원금 할당율 확대(50~60%) / 지원금 10억 상당 중점 (총재활용지원금 증가·총액·화학적 재활용 173억/년, 소각형재활용 165억/년)

□ 일본에 재활용의 규제개선 및 지원 강화

- 식유·화학연료 활용 및 경유 분경 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미국 등 국제적 선진사례의 유예로 이루어짐)
-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미국 및 영국법령 등 미연)

□ 어구 생산·유통 관리 강화, 어촌지역 분리배출·합폐쇄물 생산 및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인증제 도입 등 해양어구용 재활용 활성화

□ 재활용품 사용 촉진

- 플라스틱(PET 1만톤 이상 생산자)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상 인센티브, PET병 등 최중량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률 설정
 - * 예) 최중량제품 재활용률 의무율 목표 - '23년 2% - '25년 10% - '30년 30%
- EIU 등 주요 수출 국가 기업에 통용 가능한 국제 표준 기반의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 체계 마련(7개도/국가 - 1차시범운영)
- 유럽 EUTR의 식용용기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재생원료 생산 업체의 제조공정 안전성 검증 및 인증 추진(22.8월)
-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시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고, 표시 제품의 경우 지자체 우선 구매 제도화
-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부담금(예기유무담금, 재활용분담금 등) 감면 확대 방안 마련
 - * 예) (기준) 재생원료 사용량만큼 부담금 감면 - (기준) 재생원료 사용량의 1.5배 부담금 감면(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중 초과분까지 재생원료 사용)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0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01 제도정의

-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소비촉진

기업 친환경 홍보수단 제공



02 법적 근거

- ✓ ('24.3.29.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 ✓ ('24.7.10.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 ✓ ('24.4.11. 시행) 환경부고시 제2024-65호(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 ✓ ('24.8.29. 시행) 환경부예규-제751호(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재생원료 정의

-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정의)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를 가공·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0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03 추진경과

~ 2023

- (‘23.3) 자원재활용법 제33조의2 개정(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 (‘23.11)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입법예고(재생원료의 사용확인 및 비율표시 절차)

2024 ~

- (‘24.1)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단-ISCC 협회(재생원료 인증 상호 인정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24.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시행
- (‘24.5) 재생원료의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단-유통지원센터-컨트롤유니온코리아(재생원료 인증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 (‘24.7)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제품 모니터링 추진
환경부, 공단 및 생산자 포함 13개 기관

0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04 신청방법

표시 신청업체

표시 신청(표시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서류제출 ↓ ↑ 확인서 발급

환경부

- ✓ 서류검토 및 현장검증(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 확인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11조를 준용

검토사항

- 제품·용기 종류별 사용표시 비율이 구분되었는지 여부
- 산출 기초자료를 통해 표시 대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중 최종소비자가 사용한 후 선별 수거하여 재생 이용한 원료의 사용 여부
-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정의 적정여부

0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05 신청현황



L사, C사 등 8개사
124개 제품

신청대상품목 재생원료 사용량
약 470톤

사진: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코카콜라, 아로마티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3. 향후 추진계획



03 향후 추진계획



01 주요국 재생원료 사용확대 계획

- ☑ 국제 수준을 고려한 품목별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확대(안)

구분		EU	미국	국내 재생원료 사용의무안	
포장재 및 용기류	페트병	30%(`30~) → 65%(`40~)		30%(`30~) → 65%(`40~)	
	기타 플라스틱 (용기/트레이류)	PET	30%(`30~) → 50%(`40~) 35%(`30~) → 65%(`40~)	15%(`23~) → 25%(`26~) → 50%(`31~)	30%(`30~) → 50%(`40~)
		PET 외	10%(`30~) → 50%(`40~) 35%(`30~) → 65%(`40~)		
	기타 플라스틱 (필름/시트형)	35%(`30~) → 65%(`40~)	-	35%(`30~) → 65%(`40~)	

03 향후 추진계획



02 재생원료 사용대상 품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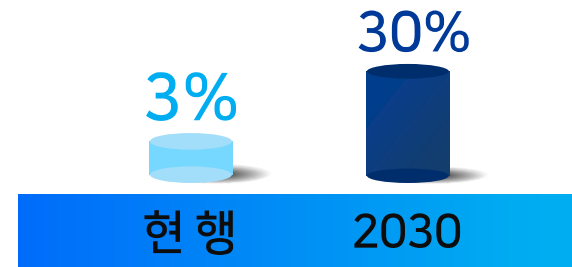
사용의무 부여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사용의무를 부여하여
재생원료 사용 유인 제고('25~)



의무사용율 상향

의무대상자 및 의무사용율 단계적 상향
국제수준에 맞게 (현행)3%→('30년)30%



03 향후 추진계획



02 재생원료 사용대상 품목 확대

연차별 사용의무율 및
의무사용량 부과 등 의무대상 관리

STEP
03

확대 품목별 연차별 사용의무율 설정 및
제도이행

STEP
02

확대 대상 품목 확정 및 사용의무율
로드맵 제시

해외 상황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대상품목 선정 및 재질별 의무 부여

STE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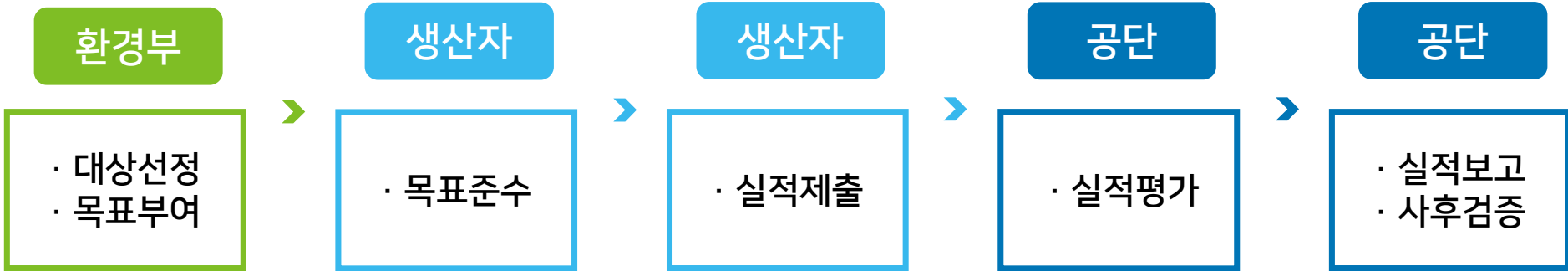
품목별 플라스틱 수요·공급 및
폐기물 발생량 조사

연차별 대상 품목 확대 및 의무율 산정기준 마련

03 향후 추진계획



03 사용의무화 목표설정 및 관리체계



환경부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 등 정책 총괄

생산자

재생원료 이행실적 확인·검증 및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의무량 감경 등 후속조치 이행

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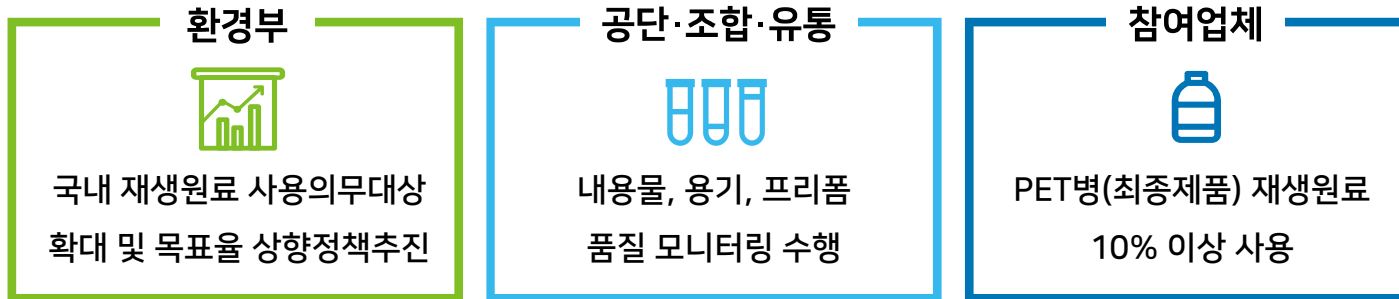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준수 및 이행 실적 제출

03 향후 추진계획



04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모니터링

✓ 재생원료 공급 안정성 검토 및 재생원료 사용 제품 품질 모니터링을 통한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① 재생원료 사용 현황 모니터링

(사용량) 재생원료 사용 현황, 전월대비 사용량, 생산업체 현황

② 재생원료 사용제품 품질 모니터링

(내용물 및 포장재) 품목별 내용물, 포장재(용기) 품질 모니터링(R-PET, V-PET)
(프리폼) 재생원료 사용 프리폼 품질 모니터링(신재대비 불량률)



재생원료 사용 통계 및 탄소저감효과 분석

(통계) 재생원료 생산·소비량 통계 검토(EU, OECD 국제통계 검토 등)
(탄소감축)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분석

03 향후 추진계획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05 해외 주요 재생원료 사용인증 현황



ISCC Plus (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국제 지속 가능성 및 탄소 인증)
바이오 경제 및 순환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섬유 원료 및 의류 생산에 재활용 원료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 기준
20%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함유한 제품 대상



RCS (Recycled Claim Standard)

5% 이상의 재생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
최종 제품의 재활용 원료 함량을 파악하는 인증 기준

03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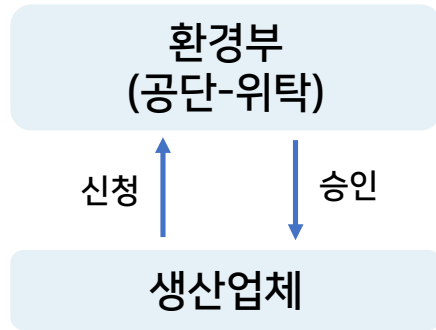
06 인증체계 고도화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인증구조 변경 (2자인증→3자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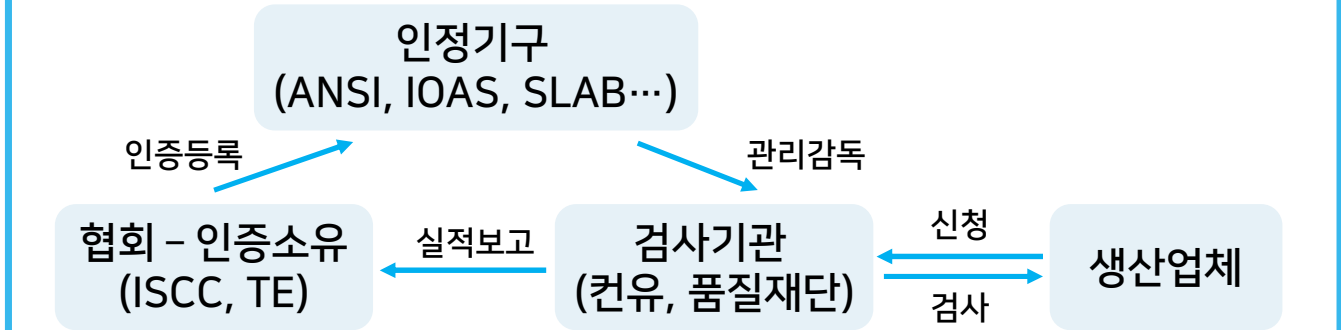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해외 인증제도 (ISCC Plus, GRS, RCS)

2자 인증



3자 인증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4. 맺는말



01 향후 추진계획

1. 품목 확대, 목표설정 및 이행안 마련

확대대상 품목 재활용시장 분석으로
의무율 산정 및 연차별 의무율 제시,
사용의무대상 확대를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2. 호환 및 상호인정

공단 - 국제 주요 인증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25)



3. 인센티브 마련

재생원료 사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탄소포인트 대상품목 편입 등 소비측면 사용확대 유도(~'25)



감사합니다

Thank you

